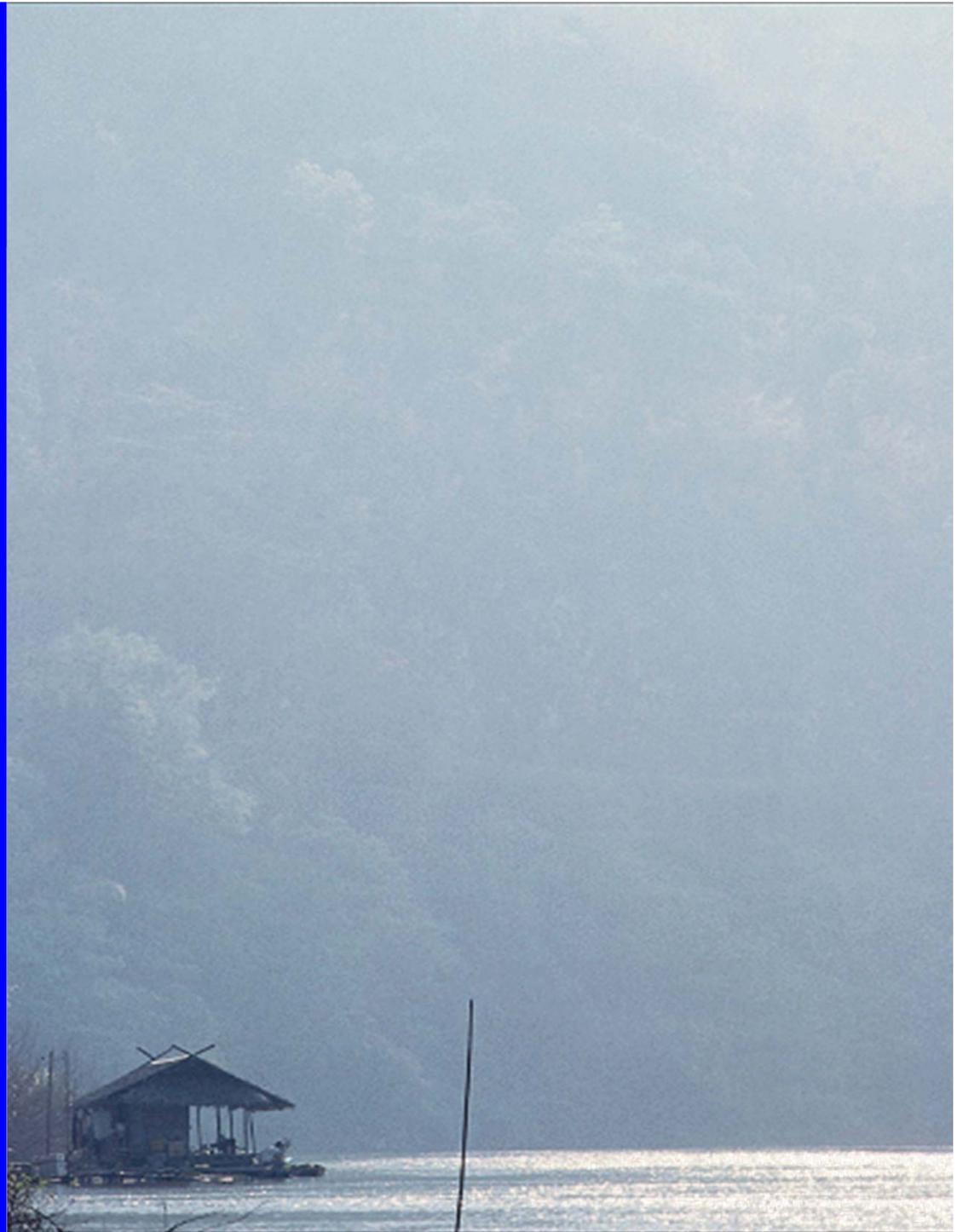


② 국제통상론

② 제3주 GATT

② 유 하상



# 1. GATT의 성립

## (1) 개관

- ❖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
- 1929년의 세계대공황 이후 극도의 보호주의적 체제로 전환 : 무역전쟁 시대 돌입
- 미국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 :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 노출 - 국제경제질서 혼란,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
- 인접국과의 bloc 경제화를 통해 자국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 강화 - 무역장벽을 높이는 악순환 거듭
- 제2차대전의 원인의 하나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 :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관세인하나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의 철폐 등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대두

## ❖ IMF 및 IBRD의 창설

- 1944년 브레튼우즈회담

- 국제통화질서 회복 :

  - 환율안정과 단기적인 국제수지 보전 : 국제통화기금(IMF)

  - 장기적인 경제개발금융 공급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 ITO 창설 실패와 GATT체제 출범

-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실패 : ITO 헌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상적이어서 주도국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

  - ITO 대신 1948년 1월 1일부터 GATT체제 출범

# GATT의 성격 및 규정의 구조

## ❖ GATT의 성격 및 목표

### ● 국제기구라기보다는 협약의 성격

-그러나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을 둔 사실상의 국제기구의 성격을 띤 협약

### ● 무역장벽 완화, 최혜국대우(MFN)원칙을 통한 세계무역 확대를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까지 세계무역질서의 수호와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

## ❖ GATT규정의 구조

### ● 전문과 본문 4부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1-2조): 최혜국대우 및 관세에 관한 규정

제2부(3-23조): 수입제한의 철폐에 관한 규정

제3부(24-35조): 기입 및 탈퇴 등의 행정절차

제4조(36-38조): 개도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규정(1965년에 확대)

## GATT 1944의 조문 구조

제1부		제3부	
제1조 제2조	일반적 최혜국 대우 양허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체약국의 공동행동 수락, 효력발생 및 등록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양허표의 수정 관세교섭 본협정과 하바나헌장과의 관계 개정 탈퇴 체약국 가입 부속서 특정체약국간의 협정 부작용
제2부		제4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통과의 자유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세평가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원산지 표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무차별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 외환조약 보조금 국영무역기업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특정상품에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협약 무효화 또는 침해	제36조 제37조 제38조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원칙 및 목적 약속 공동행동 A-G: 제1조에 관한 것 H: 제24조에 관한 것 I: 주식 및 보충규정

## (나) GATT의 조직

### ● 총회

GATT의 최고의사결정기구, 매년 1회 개최, 가입국은 1표의 투표권, 통상의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신규가입국 승인, GATT의 무의 특별면제 등은 2/3 찬성으로 결정

### ● 각료회의

정식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개시, 종료 등 중요한 계기가 있을 경우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킬 목적으로 개최되며,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은 총회에 크게 반영된다.

### ●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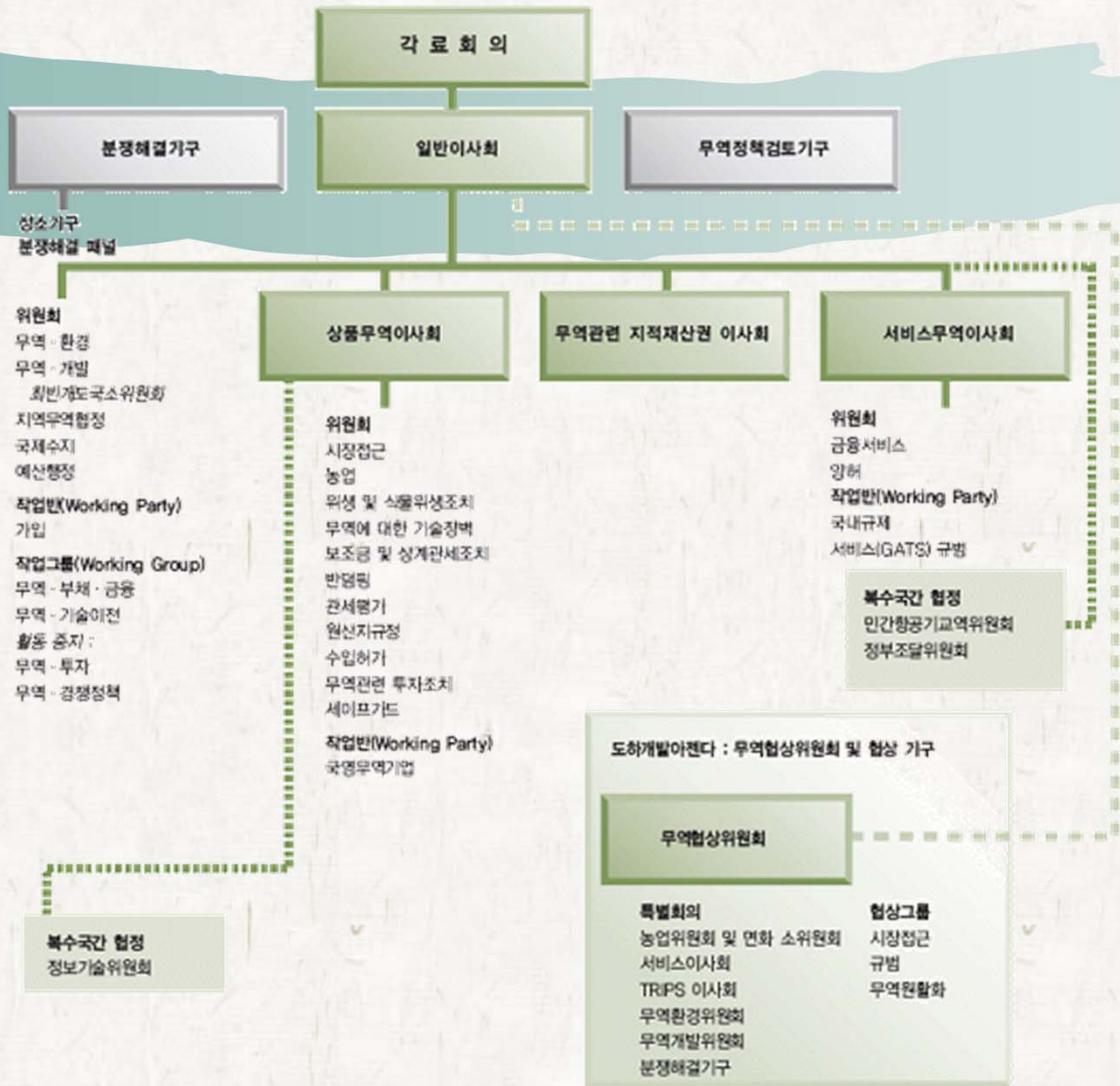
총회개최기간 이외에 발생하는 GATT의 통상적 업무를 토의하기 위한 기구, 연 10회 정도 개최, 모든 GATT 회원국에 개방,

### ● 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개도국의 무역확대방안 연구) 등

### ● 사무국





**참조**

- 일반이사회에 보고되는 일반이사회 부속기관
- 분쟁해결기구에 보고
- ..... 복수국간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복수국간 협정 관련 위원회는 그 활동을 일반이사회나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
- ..... 무역협상위원회가 일반이사회에 보고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 개최되기도 한다.

## 2. GATT의 주요 내용

### (1) GATT의 설립목적

#### ● 전문1)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 폐지로 세계무역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 1) 각국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가,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및 재화의 생산·교환 확대 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무역, 경제분야에서 상호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제무역상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호혜적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 GATT의 원칙

- GATT 체약국의 의무
- 첫째, 수출입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에 있어 타 체약국들에게 무차별대우를 부여
  -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구분
- 둘째, 관세 인하 의무. 이 두 가지 의무가 GATT의 근간을 이룸
  - 관세 인하와 관세 양허로 구분
- 셋째,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한 수량제한 금지

## 1)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 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MFN약속은 각국에 대하여 경쟁상의 기회균등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내국민대우원칙과 함께 GATT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2대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규칙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체약국들은 어떤 이익을 대가로 부여하지 않고도 최혜국대우를 원용할 수 있음. 즉, 이 규칙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님

##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 의의

-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칙이 국내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즉 수입품과 국내상품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내국세 등이 부과된다면 이는 수입품에 대한 구매를 냉대하게 되어 결국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

### ❖ 최혜국대우원칙 vs 내국민대우

- 각 수출국간에 경쟁상의 기회균등을 보장 vs 수입국내에서 국내상품과 수입품과의 사이에서 경쟁조건의 균등을 보
- 무역장해를 제거에 목표를 둠

### 3) 관세의 인하(양허)

#### ❖ 관세양허의 개념

-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함. 이 약속은 양허표에 나타나 있으며 당해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함

#### ❖ 관세양허의 방법

- 1) 관세인하 : 단순히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가장 보편적인 방법)
  - 2) 관세율의 거치 : 현행세율을 더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현행 세율의 거치(binding)방법,
  - 3) 인상한계점 :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특정수준 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도(ceiling)를 표시하는 방법
- 어떤 방법이든 관세율 수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양허한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는 없음
  - 비양허품목은 임의대로 관세율을 책정할 수 있음

## 관세율인하 방식

- ❖ 품목별인하방식(product by product approach): 1-5차라운드
  - 개별국별로 관심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율인하를 결정
  - 국제수지, 유치산업보호 등 특수상황의 고려가 가능하며 개발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배려 가능 vs 협상절차 복잡, 무역증진의 효과가 일괄인하방식보다 한정적
  - 따라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 그룹 등에서 많이 사용
- ❖ 일괄인하방식(across the board approach): 6차 케네디라운드
  - 관세인하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호관세를 인하
  - 적용 간편, 협상 용이 vs 개별국의 경쟁력차이, 세율수준의 불균형이 현존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참가국에 특혜의 평균배분을 보호할 수 없다는 단점
- ❖ 조화인하방식(harmonization cut formula): 7차 동경라운드 이후
  - 높은 세율일수록 인하 폭을 높게 하는 방식

# DDA의 관세감축 방식 논의 동향

❖ DDA에서 제시된 방식 : UR방식/스위스방식/ 혼합방식/구간별 방식

## 1) UR방식(UR formula)

- UR 협상당시 채택, 각 품목별 최소 감축율과 모든 품목의 평균 감축율을 적용하는 방식
-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방식, 보호하려는 품목은 최소 감축율만 적용 소폭 감축하여도 비보호 품목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평균 감축 의무율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예) 최소감축율 15%., 평균감축율 36%, A 품목의 관세율 200%, B 품목의 관세율 20%인 경우

감축율 적용 방식	감축율 적용 후 관세율	
	A	B
A, B 모두에게 평균 감축율 36%을 적용 ( $36+36 \div 2=36$ )	128%	12.8%
A 품목 보호, A는 15%, B는 57% 감축 ( $15+57 \div 2=36$ )	170%	8.6%

## 2) 스위스 방식(Swiss formula)

- 고율의 관세일수록 대폭 감축하고 저율 관세일수록 소폭 감축하는 방식
-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선호하는 방식, 계산공식에 있는 계수(관세 상한선)가 상한선으로 작용하게 됨, 즉 아무리 높은 관세라도 최종적으로는 계수 이하로 대폭 감축하게 됨

$$\text{최종관세율} = (\text{계수} \times \text{최초관세율}) / (\text{계수} + \text{최초관세율})$$

- 예컨대 계수를 25%, 관세율이 A품목은 20%, B품목은 50%, C품목은 100%, D품목은 200%라고 하면
- A :  $25 \times 20 / 25 + 20 = 11.1$
- B :  $25 \times 50 / 25 + 50 = 16.7$
- C :  $25 \times 100 / 25 + 100 = 20.0$
- D :  $25 \times 200 / 25 + 200 = 22.2$

감축전 관세율				감축율 적용 후 관세율			
A	B	C	D	A	B	C	D
20%	50%	100%	200%	11.1%	16.7%	20%	22.2%

### 3) 혼합방식(blended formula)

- UR방식, 스위스방식, 관세철폐의 3가지 방식을 혼합한 것
- EU가 제시한 방식
- 전체 품목 중 일부는 UR 방식, 일부는 스위스 방식, 나머지는 관세철폐 적용
- 어느 정도의 폭을 확문제는 UR방식 적용품목 비율임 :
- 미국은 가급적 제한하여 시장개방 폭을 확대하자는 입장
- EU는 보하여 민감 품목 보호 여지 확보
- 민감 품목 수가 많은 국가는 혼합방식 반대

#### 4) 구간별 방식(tiered formula)

- 관세율 구간을 구분해 각 관세율 구간별로 다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UR 방식과 스위스 방식의 절충안으로 제시
- UR 방식을 적용하되 높은 관세율 구간일수록 높은 평균, 최소 감축율을 적용
- 2004년 구간별 감축 방식에 합의됨
- 그러나
  - ① 구간별 관세 감축에 어떤 방식(선형, 조화, UR, 스위스 등)을 쓸 것인지,
  - ② 구간을 몇 구간으로 할지,
  - ③ 관세 상한선은 몇 %로 할지 논란 중

주요국(그룹)의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주요 제안내용

	미국	G20	유럽연합(EC)
감축율	60%이상: 90% 40~60%: 80% 20~40%: 70% 0~20%: 60% *개도국에는 더 낮은 감축율	(선진국) - 75%이상: 75% - 50~75%: 65% - 20~50%: 55% - 0~20%: 45% (개도국) - 130%이상: 40% - 80~130%: 35% - 30~80%: 30% - 0~30%: 25%	(선진국) - 90%이상: 60% - 60~90%: 50% - 30~60%: 45% - 0~30%: 35% (20~45) (개도국) - 130%이상: 40% - 80~130%: 35% - 30~80%: 30% - 0~30%: 25% (10~40)
관세상한	· 선진국: 75% · 개도국: 100%	· 선진국: 100% · 개도국: 150%	· 선진국: 100% · 개도국: 150%
민감품목 숫자	· tariff line의 1%	· tariff line의 1% (개도국은 1.5%)	· tariff line의 8%

### (3) 수량제한 금지 의무

#### ❖ 의의

- GATT는 수량제한(쿼터, 수출입 금지, 수출입 허가제도)에 의한 수입 규제는 완전한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양허하기로 약속한 관세의 적용 이외에는 다른 어떤 형태의 국내산업 보호조치도 수입품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 ❖ 관세장벽과 수량제한 조치의 차이

- 관세의 경우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품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그 노력여하에 따라 관세장벽을 넘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 수량제한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무역확대라는 GATT의 기본목적이 현저하게 손상을 입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휘되며, 또한 관세보다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큼.

## 다자간 협상의 개요

	명칭	참가	협상기간	관세인하	비고
1	일반적관세교섭	23	47.4-47.10	45,000품목 양허	품목별인하
2	일반적관세교섭	13	49.4-49.10	5,000품목 양허	
3	일반적관세교섭	38	50.9-51.4	9,700품목 양허	
4	일반적관세교섭	26	56.1-56.5	25억불 상당의 관세인하	
5	딜론 라운드	26	61.5-62.7	4,400품목 양허	
6	케네디 라운드 (일괄인하)	62	64.5-67.6	주요선진국의 제조업분야 관세율 35%인하	반덤핑협정 체결
7	동경라운드 (조화인하)	97	73.9-79.7	9개 선진국의 제조업분야 가중평균관세율을 7.0% 에서 4,7% 수준으로 인하	9개 MTN협 정제정
8	우루과이라운드	117	86.9-93.12	모든 회원국의 평균관세 율 인하(33%이상)	WTO설립

## 케네디라운드

- 1960년대 미국은 발전된 EEC의 차별적 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대일적자폭 누적, 월남전 수행에 따른 막대한 군비지출에 따라 미국의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 이에 미국은 타결책으로써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현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미의회는 미 통상법의 획기적인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인하의 권한을 부여하여 케네디대통령으로 하여금 관세인하 협상에 나서도록 대권을 부여하였다
- 관세인하 협상방식은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선형인하방식 채택(50%)
- 관세 평균 인하율을 35%, 관세인하 품목의 무역액이 40억달러

- 케네디 라운드에서 타결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관세의 일괄인하방식의 채택

- 케네디는 과거의 품목별 관세인하 방식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일괄인하방식을 채택

### 둘째, 호혜주의의 일부 배제

- 개도국의 주요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셋째, 의제의 확대 : 비관세장벽에 의해 관세인하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비관세장벽을 의제로 채택. 이 라운드에서는 덤핑방지협약, 국제곡물협정, ASP협정이 채택.

- ASP (American Selling Price System)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가격은 도착가격에 관계없이 동종의 미국제품의 국내가격으로 과세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EEC의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루어진 협정.
- 덤핑방지협약은 기존 GATT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제곡물협정은 소맥의 수출입가격에 대한 규약과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일 국제소맥협정으로 발전.
- 그러나 케네디 라운드는 선진국 간의 자유무역을 증진에는 데는 기여했으나 농산물 교역확대와 같은 개도국의 현안문제나 비관세장벽의 제한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어, 후진국의 무역거래에는 별다른 성과를 주지 못함으로써 선진국간의 이해조정에도 그쳤다는 비판을 받음

# 동경라운드

## ○ 동경라운드의 배경 : 신 보호주의의 이념의 대두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상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선진국들은 2차례의 오일 쇼크를 거친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 불황과 노동집약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특히 불황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 증가

○ 미국경제의 상대적 우위 상실(대규모의 재정 및 국제수지 적자: 최고의 채권국에서 최고의 채무국으로 전락-자국의 이해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관리무역성행

둘째, EC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간의 특혜무역이 성행하여 역내외간 무역에 차별적 대우가 심화되어 자유무역확대에 위협이 되었다.

셋째, 개도국의 지위향상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UNCTAD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현시켰으며, 나아가 선후진국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공업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역조건에 처해있는 자신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1차 산품에 대한 특혜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남북문제의 대두와 UNCTAD의 탄생)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정책의 책임을 대외로 돌리려는 선진국 정책당국이 받아들임으로써 보호적 무역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를 신 보호주의라고 함

## ○ 전통적 보호주의와 신 보호주의의 차이점

### (1) 선진국형 보호주의

- 1.2차의 석유파동과 높은 실업율, 국제수지적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보호주의가 시작.
- 미국은 70년대의 불황기에 들어 통상정책을 자유로운 무역(free trade)으로부터 공평한 무역(fair trade)으로 수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자국산업보호정책 전개
- EC도 단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규정 등을 통한 공동의 수입규제를 실시
- 이러한 신 보호주의는 1984년부터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지속되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남발, EU의 공동의 수입규제 강화,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목적으로 상호주의원칙(쌍무주의)을 강화, 그 대상도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분야에까지 확대 적용.

### (2) 사양산업의 보호

- 당시 선진국은 높은 실업율이 경기침체나 기술실업 등이 주요인이며 수입증대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실로 보호주의를 채택
- 이는 정치적 요인에 그 이유가 있음. 자유무역의 이익은 일반적 소비대중에게 분산되는데 비해 그 피해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유화에 따라 산업이나 노동조합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려는 일종의 정치적 횡포라 할 수 있음

### (3) 비관세장벽

- 전통적 보호주의의 주요 수단은 관세였음. 그러나 다자협상으로 관세율의 인하가 이루어져 무역정책 수단으로써의 효용이 상실. 이에 따라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최저수입가격제, 과징금, 반덤핑관세, 위생규제, 공업표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수단으로 등장

-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임.

첫째, 관세는 사전에 공표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동종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데 비해 비관세장벽은 비객관적, 비공개적, 차별적으로 적용가능. 따라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가능

둘째, 비관세장벽은 선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여론의 비난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수단과는 달리 번거로운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조치만으로 발동할 수 있는가 하면, 정부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지출 등의 조정정책 보다는 편리하다.

### (4) 다국간 무역체제의 회피

- 최근 선진국들은 보호조치 이외에도 쌍무적 자유무역지대의 설정과 같은 특혜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선진국이 이 같은 지역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자국 내의 관련산업의 시장점유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며, 전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 또한 쌍무주의에 의한 개별적 협상 방식은 경제우위에 있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 동경라운드의 결과

첫째, 관세의 인하 방식으로 관세조화방식을 채택

둘째, MTN협정체결

- 6개 비관세무역장벽 분야에 대한 다자간무역협정(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s)이 체결되었다. 이를 간략히 보면
- ①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 협정
- ②정부물자조달협정
- ③관세평가협정
- ④수입허가절차협정
- ⑤기술장벽협정
- ⑥덤핑방지규정의 개정

셋째, 농산물 무역협정 체결

- ①국제낙농협정
- ②국제식육협정
- ③농산물분야 협의에 관한 권고

넷째,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체결

## (1) UR의 출범배경-1/2

- GATT체제 출범 이후 7차에 걸친 무역협상이 개최되어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UR이 출범하게 되었다. 먼저 외부적 요인을 보면
- 첫째,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 둘째, 유럽의 높은 실업율
- 셋째, 과다한 외채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침체
- 넷째,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특히 미국의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계속 확대되었으며 일본과 대만, 홍콩, 한국 등 신흥공업국(NICs)의 등장으로 미국의 산업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 (1) UR의 출범배경-2/2

- 이상에 의하여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  
첫째, GATT체제를 벗어난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의 회색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남용에 따른 GATT 위상 위축  
둘째, 경제블록화의 진전에 따른 보호무역적 지역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증가  
셋째,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호주, 뉴질랜드 등)이 무역적자를 쌍무적 통상압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른 국가간 마찰의 급증  
넷째,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증대와 지적재산권에 마찰의 증가에 따른 GATT의 한계
  - 또한 선진국은 상품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확대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 방어적 입장에 있는 일본, 신흥공업국들은 미국, EC 등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무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 다섯째, GATT 규정상의 예외규정에 따른 무역질서 혼란  
여섯째, 그 동안 별도의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쿼타로 운영되던 섬유류 무역의 GATT체제로의 복귀요구 강화

## (나) GATT체제 내부의 요인

- 첫째,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
- 둘째,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
- 셋째, 사법권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에 따른 한계를 들 수 있다.
- 이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시는 1983년 5월에 제기되어 1986년 9월에 출범하였다.

## UR 타결의 결과

- 1986년 6월에 출범한 UR은 1993년을 넘기지 않고 타결하고자 했음
- 그 이유는 EC 통합과 NAFTA 등 지역 블록의 태동-UR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지역별, 개벽국가간의 엄청난 무역마찰이 발생 우려)
-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협상지도자에게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
-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역상품, 각국간 정치적 이해가 달려있는 농산물 분야에까지 거의 전 분야를 대상이 됨
- 및 비관세장벽을 대폭 낮춤. 특히 그 동안 명료성과 합리성 부족으로 남용되던 반 덤핑 상계관세 제도와 긴급수입규제제도에 대해 그 남용을 억제하도록 하였고, 보다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자의적인 무역규제의 여지를 축소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
- WTO 설립. 이는 법적구속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출범을 의미
- GATT의 전원일치 관행이 다수결 원칙으로 변경, 보다 쉽게 WTO가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만장일치 방식은 이해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의 빈발을 촉발하고 이에 따른 무역마찰을 가속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5. 복수국간 협정

### 가. 민간항공기무역 위원회

- 도쿄라운드 결과 탄생한 민간항공기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995년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된 상태

### 나. 정부조달 위원회

- 동 협정 당사자들로 구성, 여타 WTO 회원국 및 비회원국도 옵서버로 참가 가능
- 정부조달협정(WTO/GPA)의 이행과 운영에 대한 검토
- 새로운 국가의 가입 결정
- 현재 동 협정 24조 7항에 의한 협정문 개정 작업 진행 중이며, 2006년 말을 개정 완료시한으로 설정

### 다. 정보기술협정

- 정보기술협정위원회 : 1996.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ITA 각료선언에 따라 참가국들간 IT 제품(203개 품목)의 무세화를 결정
  - 동 참가국들간 협정이행 여부 검토 위한 위원회로 1년에 3~4번 개최
-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 Ⅶ. 의사결정방식

### 1. 기본 원칙

- WTO는 GATT의 전통적인 의사결정방식인 합의 제를 유지
-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투표 실시 (1국1표 원칙하에 과반수 표결)

### 2. 과반수 표결에 대한 예외

-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 및 특정회 원국에 부과된 의무의 면제(waiver)는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협정의 개정 및 새로운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정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